#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17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 박해철 • 박지원 • 이수진

허성무 · 서미화 · 최민희

정일영 · 임호선 · 이훈기

이광희・김 윤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관련하여 대통령임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들이차기 정부와 정책방향이 상이한 상태에서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윤석열 前대통령 탄핵 시국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공공 기관 임원에 대한 밀실 인사가 강행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 뢰를 훼손하고 기관 운영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 하였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 민주적 통제가 저해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의 중요 책무인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끝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에도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28조제5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기에 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임기가 개시되는 공공기관의 장부터 적용한다.
  - ②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공기관 의 장,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	제28조(임기) ①
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u>기관</u>	<u>기관</u>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	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u>으로 한다.</u>
<u>한다.</u>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	
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	
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	
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	
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	
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
	기는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부
	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
	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